

産業財産權4法개정안주요내용

特許法

▲ 期間計算방법 개선 = 특허법상 기간계산에 있어 기간만료일이 公休日일 때 일률적으로 그 다음날(翌日) 만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절차진행과 관련이 없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종료일을 정할 때도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 진행에만 적용토록 개선

▲ 특허출원명세서 補正기간 = 출원공고 결정전에 명세서에 대한 보정기간(1년 3개월)을 계산할 때 條約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 기간 계산 시점은 '그 우선권 주장일'이 아닌 '그 우선권의 기초가 된 출원일'로 개정.

우선권 주장이 수반된 특허출원은 新規性 판단, 先願주의 적용 등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실제 出願日(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최초국가 출원일)까지 소급적용하는 등 특별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정기간도 '우선권 주장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계산하는 것

이 기회형평에 맞기 때문.

▲ 분할·변경출원의 우선권 주장절차 개선 = 현행법상 우선권주장에 대한 증명서 제출기간이 '最先日(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된 최초출원)'로부터 1년4개월로 돼 있을 뿐 분할·변경출원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이 명시안돼 이를 '분할·변경출원일'로부터 3월이내'로 명시

▲ 特許料 등 반환 = 현행법상 '착오'로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일로부터 5년내에 청구하면 반환토록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단축조정.

또한 반환대상도 '과오납된 특허료 및 수수료'와 '무효심결 확정 이후분의 특허료', 즉 특허료를 납부한 후 당해권리가 審判에 의해 無效확정된 경우 그 효력이 특허권설정시까지 소급효과가 생기므로 독점권존속을 전제로 납부한 既納요금등까지 확대

▲ 職權心理범위(신설) = 심판의 직권심리의 범위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私的自治의 원리에 따른 당

사자의 의사존중을 위해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實用新案法

▲ 우선권주장 변경출원 = 변경출원은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후 행해지는데 변경출원시점이 대부분 우선권주장서류 제출기간(最先日로부터 1년4개월이내)이 경과한 후가 돼 현실적으로 기간내 제출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변경출원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토록 유예기간 부여.

▲ 의장권 효력에 유사의장 포함 = 의장권 효력은 등록의장의 유사의장까지 미치므로 유사의장도 추가해 규정

意匠法

▲ 보호대상 용어수정 = 현행법상 보호대상이 '고안'과 '창작'의 混用に 따른 오해소지를 없애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구별하기 위해 意匠의 보호대상을 '의장의 창작'으로 수정정리

▲ 출원변경시 院의장등록출원의 取下간주규정(신설) = '단독의장을 유사의장으로 변경출원'하거나 '유사의장을 단독의장으로 변경출원'하는 것은 출원인이 동일대상에 대해 하나의 권리를

취득키 위한 절차적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호출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기초가 된 최초의 의장등록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원출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

▲ 등록료등의 반환=특허료등의 개정취지와 같다.

▲ 의장권 존속기간 연장=UR지적재산권협정(UR/TRIPS) 등 협정문에서 의장권 존속기간을 10년이상으로 할 것을 협정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는 데 따라 존속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참고로 미국은 14년, 일본 15년, 영국 25년.

▲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제도(신설)=의장권 등록후 의장권자가 他人이 대가지급 조건으로 의장실시를 요구함에도 장기간 의장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권리남용 행위조정을 위해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제도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

商 標 法

▲ 상표사용사실증명서 제출 생략=商標 갱신등록출원시 제출하는 상표사용사실증명서가 기본취지와 달리 대부분 실제사용 사실이 아닌 갱신출원을 위해 신문광고 게재사실만을 제출

하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쳐 이를 생략한 대신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등을 강화.

▲ 갱신등록출원의 유예기간 설정=상표권자가 부득이한 사유, 과실 등으로 기간(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내 갱신등록출원을 못한 경우 기간 축적된 영업상 신용과 재산권가치를 상실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간 만료후 6개월이내 일정액의 가산료 납부조건으로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게 새로 유예기간 설정.

▲ 존속기간滿了 상표의 제3자 등록출원기회 부여=상표권자가 유예기간내 갱신등록 출원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제3자가 동일, 유사상표의 등록출원을 허용.

▲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인

의 출원우선권=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과정에서 투자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취소심결로 소멸된 상표에 대해 소멸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일성있는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권 부여.

이는 상표권자가 소멸된 상표를 타인명의로 우선출원, 등록한 다음 다시 권리를 이전받는등 상표법 악용을 막기 위한 것.

▲ 상표권 이전사실 공고 매체 확대=상표권자 변동사실을 널리 알려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없애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비절감을 위해 구독자층이 제한된 지방일간지에 형식적으로 공고하는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전사실 공고매체를 현행 '일간신문'외 에 특허청이 발행하는 '상표공보'로까지 확대.

컴퓨터용모니터 수출主力商品으로 急浮上

올들어 컴퓨터용 모니터수출이 급증, 수출주력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상반기중 컴퓨터용 모니터의 수출실적은 10억1668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7%의 높은 신장율을 나타냈다.

특히 삼성전자·금성사·삼성전관등 국내 5대모니터업체들은 상반기중 최고 100% 안팎의 신장률을 기록, 하반기 수출목표를 20~30% 상향조정하는 등 수출목표를 크게 늘려잡고 수출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수출호조는 하반기이

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에서 학생들의 방학시즌인 가을·겨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큰 폭의 신장세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수출금액의 증가와 함께 올들어 모니터수출의 두드러진 특징은 14, 15인치에서 17인치이상으로, VGA에서 슈퍼VGA 이상의 고해상도제품으로의 전환으로 수출품목의 고부가치화와 함께 향후 수출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中企구조개선設備資金〉

국산설비 競爭力 제고에 큰 몫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업체들은 설비자금지원액 9천억원 중 62.1%를 국산설비 구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화공 및 기계업종등의 경우는 국산설비 투자비중이 높아 관련설비의 국산화 촉진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공자원부가 구조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에 보고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결과보고'에 따르면 구조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2,128개사, 지원추천액 1조1,776억원)들은 시설자금지원액 9천억

이처럼 올들어 컴퓨터용 모니터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형PC업체들의 저가경쟁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된데다 국내업체들의 꾸준한 품질개선과 고급제품의 잇단 개발로 국산제품의 품질이 크게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BM·애플·컴팩등 대형PC업체로부터의 대규모 OEM물량 수주도 수출신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중 62.1%인 5,590억원 상당을 국산설비 구입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성형기계류(20.7%)와 물품취급장비류(12.3%), 용접 및 조립집합장치류(12.1%)등으로 자동화관련기기 및 중요부품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구조개선추진업체의 전체매출이 올해의 13조 4,914억원에서 16조 3,800억원으로 21.4%가 증가하고 수출은 3조 8,910억원에서 5조 3,393억원으로 37.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됐다.

한편 상공부는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를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 애로상황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해결하는 등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 애로상황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해결하는 등 사후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중진공의 지도요원을 활용, 8월말까지 구조개선사업 선정업체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도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선정, 추천후 6개월이내에 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업체별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94년상반기까지 이 사업에 대한 산업관련 파급효과 및 기여도를 분석, 구조개선사업효과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